

## 지역사회 『1사1어르신 채용』 결연을 위한 서대문구 ↔ 북아현점블루핸즈 업무협약서

서대문구와 북아현점블루핸즈는 지역 내 『1사1어르신 채용』을 통해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1조(목적) “서대문구”와 “북아현점블루핸즈”(이하 “양 기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의 근로능력과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과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어르신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및 지원
2. 어르신의 근로능력과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제공
3. 어르신일자리 창출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4. 구인·구직 현황 상호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적극적 취업알선 방안 강구
5. 기타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 사업 발굴 및 협력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내용은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1월 19일

북아현점블루핸즈  
대 표 이 봉 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 문 석 진

\_\_\_\_\_

\_\_\_\_\_

## 지역사회 『1사1어르신 채용』 결연을 위한 서대문구 ↔ 북아현점블루핸즈 업무협약서

서대문구와 북아현점블루핸즈는 지역 내 『1사1어르신 채용』을 통해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1조(목적) “서대문구”와 “북아현점블루핸즈”(이하 “양 기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의 근로능력과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과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어르신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및 지원
2. 어르신의 근로능력과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제공
3. 어르신일자리 창출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4. 구인·구직 현황 상호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적극적 취업알선 방안 강구
5. 기타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 사업 발굴 및 협력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내용은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 문 석 진

북아현점블루헨즈  
대 표 이 봉 만

\_\_\_\_\_

\_\_\_\_\_